



광진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관용차량 불용 결정

1. 광진구의회-1518(16.03.03.)호 관련입니다.

2. 구 의회에서 불용요청한 스포츠 유틸리티차량(서울34러9841, 1대)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및 시행규칙 50조,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.

불용 물품내역

(단위 : 천원)

분류번호	품명	규격	장부가액	구입일자	내용연수	불용기준
25101507	스포츠 유틸리티차량	다목적승용차, 현대자동차, 스타렉스 RV, 9인승, SVX 2WD 고급1형, 디젤	18,319	2002년	7년	○ 내용연수 및 최단운행연한(7년&12만km)의 1/3초과하여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및 수리비 과다 소요
계	1대	규격 첨부	18,319			

붙임 : 불용결정통보서 1부. 끝.

주무관 **박순재** 계약팀장 **代오선아** 재무과장 **김종구** 기획경제국장 **03/03 고재풍**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3596 () 접수 ()

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/ <http://www.gwangjin.go.kr/>

전화 02-450-7354 /전송 02-3425-1725 / / 대시민공개

“동화나라 광진에서 상상충전!!”